

동경도 내리마구의 계약형 녹지보전제도 운용실태

The Application of the Contract typed Open Spaces Conservation Systems in NERIMA Ward, TOKYO

이 용 태*

목 차

- | | |
|-------------------------|---------------------|
| I. 연구개요 | III. 계약형 녹지제도의 운용실태 |
| II. 보전대상지 현황과 녹지보전제도 개요 | IV. 종합분석 |

I. 연구개요**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경과 개발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서울시 강남구의 대모산 관련 소송 사례 및 공원용지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 녹지보전과 관련한 최근의 여건변화는 지금까지 녹지보전의 주요수법으로 활용되어 왔던 지역·지구제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원용지를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녹지보전을 둘러싼 이 같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수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전수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유지내의 녹지보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보전방식을 제시하고자, 근년 일본에서 소규모 민유녹지 보전의 유효한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계약형 녹지보전」수법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동경도 23구중에서 가장 먼저 이 수법을 도입하여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녹지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내리마구(이하 練馬區로 한다)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계약형 녹지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운용실태를 분석하였다(<표 1>).

동경도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練馬區는 원래 균 교농촌으로 발전해온 지역으로 수림지나 농지 등이 상당히 보존되어 있지만, 60년대 이후 도시화

* 서울시청 환경관리실 조경과 조경기획팀장

<표1> 동경도내 「시민의 숲」 제도 운용사례(和多(1999), 練馬區(1988), 日満(1997)에서 변경작성)

자치체	명칭	제정	근거	대상면적	계약방식	계약기간	관리주체	보조내용	매입	비고
練馬區	후게 터	1975	조례	1,000㎡이상	사용대차	5년	구	固·舊稅 * 의 면제	有	
世田谷區	개방수림	1977	조례	300㎡이상	사용대차	1년이상	구trust	固·舊稅 * 의 면제		
足立區	후게 터	1987	요강	300㎡이상	사용대차	5년	구	固·舊稅 * 의 면제		
町田市	시민의 숲	1972	요강	5,000㎡이상	사용대차	3~10년	시		有	
保谷市	삼림공원	1977	조례	2,000㎡이상	사용대차	3~5년	시			
昭島市	공개수림	1989	요강	300㎡이상	사용대차	5년	시	고정자산세의 일부지원		

* 固稅는 고정자산세, 舊稅는 도시계획세

가 진행되면서 생활주변의 녹지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練馬區, 1997c : 1997d). 1997년에 발표된 「녹지 실태조사」에서는 녹피율이 22.6%로, 동경 23구내에서는 시부야구(豊谷區)에 이어 두 번째로 녹피율이 높지만,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30%에는 밀들고 있으며, 지난번 조사(1992년)와 비교하여 2.5%가 감소되었다(練馬區, 1997).

시가지가 매년 확장되고 있는 練馬區는 공원녹지 등의 Open Spaces가 패적인 생활환경이나 방재기능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가상승·인구집중·재정여건 등으로 추가적인 녹지공간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부지립¹⁾ 등 민간소유의 녹지가 많은 練馬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널리 구민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하여 練馬區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보전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練馬區가 발표한 「綠地 實態調查 報告書」(1997)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음에, 계약형 녹지보전 수법의 도입배경과 운용실태를 분석하

기 위하여 행정 담당자에 대한 Interview('97년, '98년 각각 두 차례씩)와 행정자료에 기초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현지조사를 통하여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2. 기존 연구동향

일본의 계약형 녹지보전제도에는 법률에 기초한 「시민녹지」와 조례·요강에 기초한 「시민의 숲」이 있다. 李(1999)는 계약형 녹지제도의 종류와 변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밝힌 바 있고, 李·恒川(1999)은 동경도 練馬區의 수림지보전제도를 사례연구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식경향을 기초로 한 「시민녹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시민녹지」제도와 유사한 「시민의 숲」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소개에 관한 문헌과 座間 등(1985), 青柳·山根(1992), 和多(1996)의 연구논문이 있다. 이 중에서 座間 등은 일본에서 최초로 제도화하여 운영한 橫濱市의 「시민의 숲」제도를 사례연구하여 세금·관리 등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지가가 비싼

1) 건설성이 추진한 녹(綠)의 master plan(1977.4)에 의하면 시가화 구역에 있어서 녹지확보의 목표수준을 30%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 premises forest 또는 residential forest로 번역되며, 주로 고령하여 존재하는 농가 등의 부지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령을 말한다.

대도시권의 녹지보전을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을 밝혔고, 青柳·山根도 横浜市의 「시민의 숲·제도를 사례연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토지소유자의 토지자산운용면에서도 유효한 시책임을 밝힌 바 있다.³⁾ 和多는 앙케이트에 의한 두 시기의 비교조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지역주민이나 이용자의 참가가 필요하며 또한 계약갱신이나 상속 등의 발생시에 나타나는 토지매입 신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형 녹지제도에 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한 横浜市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동경도 練馬區의 계약형 녹지보전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의 성립 배경이나 운영실태를 연구한 사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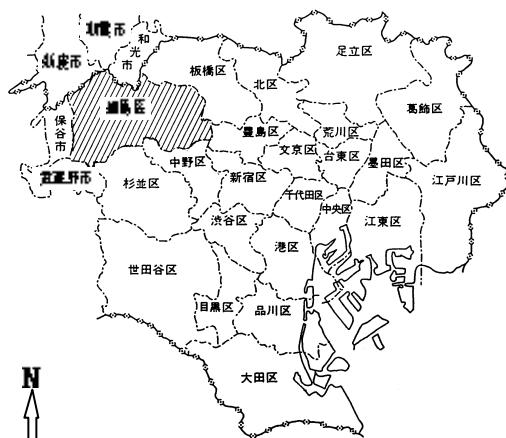
3. 練馬區의 일반개요

練馬區는 동경도 23구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북동에서 남으로는 板橋區, 豊島區, 中野區, 杉並區에 이어지며, 서에서 남서로는 保谷市, 武藏野市와 경계를 접하며, 북은 埼玉縣의 新座市, 朝霞市, 和光市에 인접하고 있다(<그림 1>). 경·위도상으로 보면 동경 139도 34분~139도 41분, 북위 35도 42분 30초~35도 46분 30초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練馬區의 면적은 48.2km²로 그 형태는 동서 약 10km, 남북 약 4~7km의 거의 장방형의 모양이다. 동경도 전체면적인 2,187km²의 약 2.2%, 23구 총면적인 621km²의 7.8%로 大田區, 世田谷區, 足立區, 江戸川區에 이어서 다섯번째의 면적을 보유하

고 있다(練馬區, 1997a : 1997b).

練馬區내의 공원(기타 공공녹지 포함)은 도립공원 4개소를 포함하여 479개소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1.7km²로 구 총면적의 3.6%이다. 구민 1인당 공원면적은 2.08m²로 1970년의 0.73m²에 비하면 3.7배가 되지만, 시가지에서 필요로 하는 1인당 공원면적인 5m²³⁾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에서는 1990년에 확정한 「練馬區 長期綜合計劃」, 1997년에 발표한 「練馬區 中期實施計劃」에서 2000년까지 구민 1인당 3m²의 공원면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 동경도 練馬區의 위치도(練馬區, 1997b)

II. 보전대상지 현황과 녹지보전제도 개요

1. 보전대상지 현황

공공소유의 공원녹지를 제외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보전대상지인 자연상태의 수림지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로서는 1990년에 조사를

3) 도시공원법(1956) 시행령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실시하여 1997년에 보고된 「鍊馬區 緑地 實態調査 報告書」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림지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우선, 구전체의 녹피구성 및 현황 파악을 하였고, 그중 300㎡이상의 녹피구성 및 현황파악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전대상의 최소면적인 300㎡이상의 수림지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였다.

1) 녹피구성과 증감

구전체의 녹피율⁴⁾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5.1%에서 22.6%로 2.5%(약 1,189천 ㎡)가 감소하였다(<표 2>). 녹피증감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수림지·잡초지는 소량 증가하고 있지만 보통의 논·밭을 비롯한 농지의 녹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녹피감소의 주된 원인은 농지의 감소라고 말할 수 있다. 녹피율의 주요 구성 요소인 수목피복률은 최근 5년간 0.4%가 감소하였으나,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그중 40.2%가 개발 등으로 사라졌다(<그림 2>).

<표 2> 녹피구성과 증감현황(鍊馬區(1997a)에서 변경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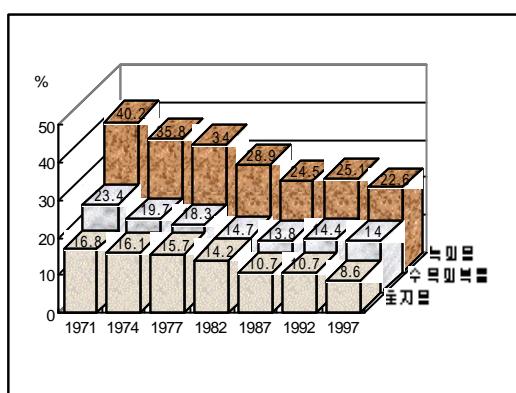
(단위 : 천㎡, %)

구	총		1992		1997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녹 피	수목피복지	6,942.1	14.4	6,792.2	14.0	-149.9	-0.4	
	수 림	5,509.7	11.4	5,849.4	12.1	339.7	0.7	
	과수원*	518.7	1.1	354.2	0.7	-164.5	-0.4	
	묘포장*	913.7	1.9	588.6	1.2	-325.1	-0.7	
	초 지	5,138.6	10.7	4,999.2	8.6	-139.4	-2.1	
지 역	잡초지	931.7	1.9	1,230.9	2.6	299.2	0.7	
	보통밭*	3,557.8	7.4	2,463.6	5.2	-1,094.2	-2.2	
	잔디밭*	649.1	1.3	404.7	0.8	-244.4	-0.5	
	합 계	12,080.7	25.1	10,891.4	22.6	-1,189.3	-2.5	

주 : *은 농지로 분류하였으며, 구의 총 면적은 48.2㎢이다.

2) 300㎡ 이상의 녹피지 구성과 현황

鍊馬區내에 잔존하는 300㎡이상의 녹피면적은 8,487천 ㎡로 전녹피면적(10,891천 ㎡)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그 구성을 분석해 보면 수림지가 43%, 초지가 12.8%, 농지가 44.2%로 수림지와 농지의 비중이 높다. 녹피의 규모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규모가 클수록 농지의 비중이 높고, 규모가 적을수록 수림지의 비중이 높다(<표 3>).



<그림 2> 연차별 녹피율 구성요소 변화

<표 3> 300㎡ 이상의 규모별 녹피 현황

규 모(㎡)	수림지	잡초지	농 지	합 계
300~500	417	84	58	559
500~1,000	536	147	230	913
1,000~2,000	563	164	500	1,227
2,000~3,000	337	111	574	1,022
3,000 이상	1,737	582	2,387	4,766
합 계	3,651	1,087	3,749	8,487

주 : 鍊馬區(1997a)에서 변경작성, 단위는 천 ㎡

3) 보전대상지(300㎡ 이상 수림지)의 현황과 구성

전녹피면적(10,891천 ㎡)중에서 300㎡ 이상의 수림지는 3,651천 ㎡(33.5%)이지만, 이중에서 녹지보

4) landsat 5호의 공중사진을 관찰하여, 10m 이상의 녹피를 추출한 다음 그 면적비율을 나타낸 것이다(녹피분포도는 축척 1/2,500의 지형도에 작성).

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민간소유의 수림지 비율은 62.5%(2881천ha)이다. 이 민간소유의 수림지를 부지림, 독립림⁵⁾, 사찰림⁶⁾으로 분류하여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이 부지림(75.5%)이고, 독립림은 16.9%, 사찰림은 7.6%이다(<표 4>). 규모별 특성을 보면, 부지림·사찰림은 500~1,000ha 규모의 것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독립림은 3,000ha 이상의 대규모인 것이 높은 분포를 보인다. 즉 부지림이나 사찰림은 그 부지면적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지만, 독립림은 「휴게림」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독립림은 미이용지에 많기 때문에 개발 등에 의해 소규모일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를 수림지 중 보전제도에 의하여 지정보호되고 있는 수림지는 총 2,881,210ha(1,119개소) 중 316,674ha(126개소)로 전체의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미지정 수림지의 보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표 4> 300m² 이상의 수림지 현황

(단위 : ha)

구 분		300~500	500~1,000	1,000~2,000	2,000~4,000	4,000~9,999	소 계
부지림	개소	196	223	165	80	191	905
	면적	77,735	193,324	232,435	192,382	1,021,902	2,124,498
독립림	개소	15	22	32	14	33	121
	면적	6,041	19,695	45,682	33,138	381,740	486,301
사찰림	개소	15	24	23	12	19	99
	면적	5,925	12,602	33,408	29,506	133,675	220,121
합 계	개소	226	324	220	106	243	1,119
	면적	89,701	231,226	311,530	260,431	1,988,322	2,881,210

주 : 繡馬區(1997a)에서 변경작성

2. 농지보전제도 개요

민간이 소유하는 수림지를 개발로부터 보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공공녹지로 조성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대상토지를 전부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보전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보전제도를 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지보전을 위해 繡馬區가 운용하고 있는 주요 농지제도에는 구 조례에 기초한 「보호수림」제도와 「휴게림」제도, 구 요강에 기초한 「특정보존수림지」제도가 있다.

1) 보호수림

『繡馬區의 농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기초하여 면적 1,000ha 이상의,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림에 대하여 그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농지를 「보호수림」이라 한다. 수림지의 관리는 소유주가 하며, 그 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1998년 기준, 연간 65엔/ha). 가지절단 등에 의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가 손해보험에가입하여 소유주에게 부담이 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되어온 수목수림의 별채·이식은 조례에서 금지되고 있지만(제16조), 부득이 별채하는 경우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인 「녹화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제11조). 이것은 해제된 직후의 개발에 의한 별채 등을 가능한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된다.

5) 민가 등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수원을 말한다.

6) 진자(神社)나 절(寺)을 예워싸고 조성되어 있는 수원을 말하며, 神寺林을 사찰원으로 번역하였다.

1965년 「長命寺 보호수림」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1998년초 현재 72개소, 208,564㎡가 지정되어 있다. 1980년대에는 이 제도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정실적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3개소, 3,946㎡가 1980년대에 해제되어 개방 등으로 사라졌다.

2) 휴게림

「휴게림」이란 구내에 남아있는 생활주변의 가까운 수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활용도 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보호수림종에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조례에 기초하여(제37조) 토지주와 계약을 맺고 구축이 정비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계약형 녹지를 말한다.

「휴게림」은 편의상 식생을 기초로 하여 잡목림과 죽림, 입지를 기초로 하여 부지림과 독립림, 지형을 기초로 하여 사면림과 평지림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표 5>). 이 구분에 의하면 「휴게림」의 일반적인 수림형태는 잡목림(39/43개소 : 91%) · 평지림(35/43개소 : 81%) · 독립림(28/43개소 : 65%)이다. 덧붙여, 사한림은 원래 개방된 수림이기 때문에 「휴게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매년 평균 2~3개소씩 지정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1,000~2,000㎡의 수림지가 가장 많고 (22/43개소), 면적비율면에서는 3,000㎡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다(43.8%).

3) 특정보존수림지

「특정보존수림지」란 구내에 잔존하는 비교적 소규모인 수림을 보전 ·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소유

주가 수림을 정비하고 구민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곳을 「練馬區 특정보존수림지사업실시요강」(1987, 이하 요강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구가 「특정보존수림지」로 지정한 녹지이다. 면적 300㎡ 이상의 수림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되면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가 전액 면제된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며,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는 구가 보조하고 있다.

1987년 早宮1丁目에 있는 490㎡의 수림이 「제1호 특정보존수림지」로 처음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개소가 지정되었지만, 그중 1개소는 해제, 1개소는 「휴게림」으로 변경되었다. 1998년초 현재 11개소, 6,110㎡가 지정되어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 제도시행의 초기에는 활용하게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지정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III. 계약형 녹지제도의 운용실태

1. 성립배경

「휴게림」제도는 1975년 清水山(大泉町 1丁目)내의 수림지에 자생하는 식물인 엘레지⁷⁾ 보호운동을 계기로 성립하였다. 1974년 6월 구내에 거주하는 양치식물 연구가 小黒順造로부터 白子川 유역의 사면림에 당시 多摩地方에서 그 보호가 주장되던 엘레지 (*Erythronium japonicum* Decne) 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다음해에 확인되었다. 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수림을 지키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기존의 「보호수림」제도로는 토지주의 세금면제 등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체 사무소에 토지주의 세금경감을

7) 다년생 초본으로 세계에 약15종, 한국에 1종이 분포하며, 대개는 수령지의 비옥한 땅에 군락을 이루며 자생한다.

요구하는 등 다양한 결충을 거쳐, 임차계약에 의한 수립보전 수법인 「휴게림」을 제도화하였다.

「清水山 휴게림」은 1975년에 최초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계약갱신을 해 오고 있으며, 「稻荷山 휴게림」에 이어서 두번째로 면적 이 크다. 또한 武藏野의 모습을 간직한 전형적인 잡목림이며, 白子川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면림이며, 일반민가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림이기도 하다. 이 수림에는 현재 무수한 애레지가 자생하고 있으며, 개화철에는 6만여명이 찾는다고 보고되고 있다(練馬區, 1998). 「清水山 휴게림」은 전체면적 7,422㎡ 중에서 1989년·1995년에 구의 토지개발공사가 그중 약 40%인 2,979㎡를 매입하였고, 현재는 약 60%인 4,443㎡가 사유지로 남아 있다.

2. 종류 및 지정현황

현재 練馬區에는 구조례에 기초한 「휴게림」과 도시녹지보전법에 기초한 「시민녹지」의 두 종류가 혼용되어 운용되고 있다. 「휴게림」은 1975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1972년 전국최초로 운용된 “横浜市”의 「시민의 숲」제도를 모델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표 6>).

「휴게림」은 면적 1,000㎡이상의 수림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주와 토지 일시사용 임차계약에 의하여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빌리는 대신에 구는 토지주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기간만료시에 갱신을 하고 있다. 수림정비는 산책로나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며, 가능한 자연상태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75년 「清水山 휴게림」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0년초 현재 43개소, 약 102천㎡의 부지림 또는 독립림을 「휴게림」으로 지정하여 근린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표 5>). 「시민녹지」는 도시 지역의 녹지보전과 관련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시녹지보전법」(1973)에 기초하여 1995년에 제도화되었으나, 練馬區는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요강에 기초한 「시민의 숲」제도가 녹지보전의 유효한 수법으로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법적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상속세에 대한 조치를 한 점과 보전대상지를 300㎡까지 하향조정하여 범위를 확대시킨 점이 특징이다.

<표 6> 「휴게림」과 「시민녹지」의 내용비교

구 분	휴 게 림	시 민 녹 지
성 립 근 거	조례	도시녹지보전법
도 입 연 도	1975	1998
대 상 면적	1000㎡이상	300㎡이상
계 약 기 간	5년	5년 또는 20년
계 약 주 체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녹지관 리기구
조 세 지 원 상 경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지 가 세 보조없음	비과세 규정없음 1998년부터 임시조치로서 비과세 평가액의 20%감면조치 (20년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
비 과 세	구청	지방자치단체·녹지관리기구

주 : 「시민녹지」는 도시녹지보전법상(1973)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 운용실태

1) 지정절차

구체적인 문용절차는 수림지 소유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소유주동의를 요구하는 수림이용 의뢰서의 송부, 소유주의 수림이용 동의서의 제출, 동의성립후 토지의 무상대부의 계약체결, 수림내의 간단한 정비, 시민개방 및 유지관리 등의 수순이다(<그림 3>).



<그림 3> 「휴게림」의 지정절차

(1) 적지선정

수림지 소유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구축은 먼저 「휴게림」으로서의 적지선정을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한다. 그때 적지선정의 기준으로 수림의 형태와 규모, 접도조건, 소유주의 의향 등이 검토된다. 개설한 후의 이용 안전성, 관리, 장래 계획된 매입예의 대응 등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선정에 임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형상은 단형, 접도는 2면, 수림의 형태는 부지림이나 잡목림·사면림·죽림 등, 면적은 1,000㎡이상 등을 확인한다.

(2) 토지주와의 계약

적지로 판단되면 구축은 그 토지주에게 수림이용 의뢰서를 송부하고 이용동의서를 접수하여 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휴게림」으로서의 기능은 구와 토지주와의 사이에 「토지 일시사용 임

차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시작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구에 의한 토지의 무상차용, 5년의 계약기간, 토지의 매각·저당권 설정시의 토지주와 구의 사전협의, 계약해제시의 구의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제의 문서에 의한 6개월전의 독촉 등이다.

이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 대한 Incentive로서는 지방세인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면제, 구의 수림지 관리대행, 고사목에 의한 근처 자동차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구의 손해보험 가입 등을 들 수 있다.

(3) 수림지의 정비

「휴게림」은 가능한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며, 간단한 시설설치로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최소한의 입구(2개소 정도), 안내판, 주의판, 둘내등, 벤치, 낮은 로우파크과 산책로, 외주목책 등이다. 특히 부지림의 경우는 주거부분과 수림과의 경계에 높이 1.8m정도의 능망형펜스를 눈에 띠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

신규로 공원을 개설하는 경우, 1㏊당 정비단가는 거의 3만엔이지만 「휴게림」은 5천엔으로 정비할 수 있고, 관리비용도 1㏊당 공원의 1,600엔에 비하여 270엔으로 대폭 절약할 수 있다(韓馬區, 1998). 이 제도는 행정측에 있어서는 적은 비용으로 공원과 동일한 효과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4) 시민개방과 수림관리

이렇게 정비된 「휴게림」은 인근 주민의 일상적인 이용에 제공된다. 개방된 「휴게림」은 구청·공원관리사무소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다. 구 공원

녹지과는 「휴게림」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리는 동·서 공원관리사무소가 하고 있다. 시설정비후에는 필요에 따라 전경 등의 수목관리, 하예작업, 청소, 시설수리 등 의 유지관리가 실시된다. 관리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근린주민으로부터의 낙엽이나 일조에 대한 불평이다(練馬區, 1998). 「휴게림」의 대부분이 주택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내 수림 특유의 고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練馬區는 한건씩 대응하여 녹지의 효용을 근질기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설득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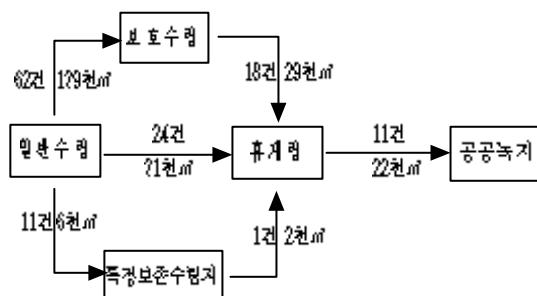
2) 운동시스템

민유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 가운데 계약형 녹지인 「휴게림」의 역할규명 을 위하여 보전제도의 운동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그림 4>는 현재 「휴게림」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는 43개소(<표 5>)의 지정경위를 「구의 행정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것을 「휴게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보면, 「일반수림(보전제도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림, 이하 동일) → 보호수림 → 휴게림」형(전체의 41.9%), 「일반수림 → 휴게림」형(전체의 55.8%), 「일반수림 → 특정보존수림지 → 휴게림」형(전체의 2.3%)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유형은 첫번째와 두번째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보호수림」으로 지정된 수림종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다시 「휴게림」으로 지정전환한 사례로서 개소당 평균면적이 1,000㎡내외로 비교적 규모가 적고,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많이 활용된 경우이다. 예

를 들어 大泉學園町에 있는 「影山綠地」는 1978년에 「보호수림」으로, 1988년에 「휴게림」으로 지정전환된 후 1994년에 구가 이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개원한 사례이다. 이처럼 일반수림지를 먼저 「보호수림」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보시킨 다음, 이를 매입하여 「공공녹지」로 편입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형 녹지인 「휴게림」이 중간단계의 완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일반수림지가 직접 「휴게림」으로 지정되는 사례로서 개소당 평균면적이 3,000㎡내외이며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정경로이다(<그림 3>).

그리고 練馬區는 보전대상지에 대한 토지매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형 녹지인 「휴게림」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練馬區, 1998), 1982년 이래 신청한 11개소, 약 22천㎡ 전체를 매입하였다. 매입대금은 기본적으로 신청한 다음해의 일반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만 구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공원사업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동경도의 「구·시·정·촌 보존수림지 등 공유화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4> 녹지보전제도 운동시스템(李鍾太, 1999)

3) 제도의 특성

(1) 보전의 안정성 측면

구가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공원 등의 공공녹지가 보전의 안정성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재정여건으로 방대한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 안정성이 높은 방법은 「보호수림」, 「특정보존수림지」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지역·지구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단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보전지구로 지정만 되면 공공녹지만큼이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하겠으나, 최근에는 토지에 대한 권익과 개발욕구가 증대하여 추가적인 보전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계약형 녹지인 「휴게림」은 토지주와의 계약기간이 5년, 시민녹지는 10년 또는 20년으로 전자에 비하여 단기적인 보전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만큼 녹지를 개발 등으로부터 유보시킬 수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그 기간중에 매입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소유와 개방성 및 관리주체 측면

계약형 녹지인 「휴게림」, 「시민녹지」는 지정대상지가 사유지라는 측면에서 「보호수림」, 「특정보존수림지」와 유사하지만, 공유지인 공공녹지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에 대하여 수림지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계약형 녹지는 「특정보존수림지」, 「공공녹지」와 유사하지만, 수림지를 폐쇄하고 있는 「보호수림」과는 구별된다. 또한 계약형 녹지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보호수림」과 「특정보존수림지」는 토지주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4. 계약형 녹지의 향후 전망

1) 지역제 녹지(「보호수림」, 「특정보존수림지」)의 계약형 녹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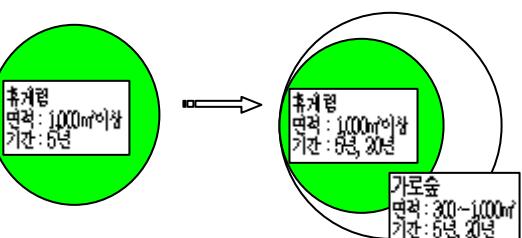
녹지보전지구 등의 법률에 기초한 지역제 녹지가 계약형 녹지로 전환된 사례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요강에 기초한 소규모 지역제 녹지가 계약형 녹지로 전환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경도 練馬區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1998년 현재 조례에 기초한 지역제 녹지인 「보호수림」, 「특정보존수림지」의 80개소중 18개소, 13개소중 1개소가 각각 계약형 녹지인 「휴게림」으로 전환되었다(李·恒川, 1999).

특히 지정기준이 1,000㎡이하인 「특정보존수림지」는 그동안 토지소유주가 각종 이점이 있는 「휴게림」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어도 면적기준 때문에 불가능했으나(「휴게림」은 1,000㎡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5>와 같이 「시민녹지」내에 새로이 「가로숲」(300~1,000㎡)이 설치되면서 관리부담과 세금부담의 경감이라는 이점이 있는 이제도로의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계약형 녹지의 통합운영

練馬區는 「휴게림」보다 상속세의 일부감면이라는 유리한 취급을 하기 때문에 「練馬區 市民綠地事業 實施要綱」(1997)에 기초하여 「시민녹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0㎡이상의 대규모 수림은 「휴게림」으로, 300~1,000㎡

[현행] : 「휴게림」제도



<그림 5> 「市民綠地」 운영계획(李蘊太, 1999)

의 소규모 수림은 「가로숲」으로 구분되어 대응하고 있다. 「시민녹지」를 문용함에 있어서 그 동안 구민에게 친숙한 기존의 「휴게림」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계약갱신시에 순차적으로 이 제도에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1998년 현재 기존 「휴게림」의 약 25%(16개소, 2.5ha)가 「시민녹지」로 갱신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계약형 녹지의 공공녹지화

練馬區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청구가 있으면 보호수림, 특정보존수림지 등의 지역제 녹지보다 계약형 녹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영조물 녹지인 공공녹지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練馬區, 1998). 조사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조례에 기초한 계약형 녹지인 「휴게림」중에서 토지소유주가 신청한 11건, 22,000㎡를 전부 공유화하였다.

5. 고찰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練馬區가 문용하고 있는 계약형 녹지인 「휴게림」은 관내에 자생하는 열대지의 보호운동을 계기로 제도화되었으며, 구청·토지주·주민측의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녹지보전모델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약형 녹지」에는 구조례에 기초한 「휴게림」과 법률에 기초한 「시민녹지」의 두 종류가 있으며, 토지주는 Incentive 내용은 비슷하지만 상속세 등의 감면조치가 있는 「시민녹지」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구에서도 「시민녹지」로의 통합운영을 추진중이다.

한편, 사유토지를 「임차」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전하는 「계약형 녹지」는 토지주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과거의 지역·지구제보다는 민족적인 제도라 평가할 수 있으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용상의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練馬區는 보전녹지중에서 토지매입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형 녹지」에 대하여 우선적인 배려를 함으로써 이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차칫 타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토지매입을 위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② 계약형 녹지는 적어도 계약기간 동안은 개발 등으로부터 녹지를 보전할 수 있겠지만, 상속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이 안될 때 이것을 매입하여 공유화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하여 반환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부딪히게 되며, 계약기간 종료시의 토지매입요청이 수건(數件)인 경우 재정적인 대처가 곤란하다. 「휴게림」의 소유주는 재산가가 많기 때문에 상속시의 상속세는 방대한 것으로 실제로는 수림의 매각대금을 이것에 충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례상에 토지매입의 청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제35조), 토지매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도시녹화기금」제도의 활용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보호수림이나 특정보존수림지와 같은 지역제 녹지는 일단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해제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이것을 휴게림

등의 계약형 녹지로 전환시킨 후 계약갱신에 불응하고 개발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④ 계약형 녹지의 지정실적이 최근 담보상태인 점과 보전대상지의 90%가 미지정 상태인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의 일부감면(20년 계약인 경우 재산평가액의 20%)이 계약형 녹지로의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주가 현실적으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속세의 감면폭을 확대하고 대상지의 계약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계약형 녹지제도의 정착 여부는 대상토지주의 설득과 협조가 관건이므로 토지주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Incentive 개발이 선결 과제이다.
- ⑤ 보전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300㏊이하의 소규모 녹지도 그 자체의 기능면에서는 역할이 동일하지만 전혀 보전장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두지 않는 등의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IV. 종합분석

도시에 있어서 녹화·녹지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고, 시가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민유지에 대한 녹화·녹지보전을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서울시는 도심내의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마당이나 마을마당 등의 소규모 공원조성에 공을 들

여왔으나 민유지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최근에는 실적이 둔화되는 추세이며, 또한 녹지보전의 핵심역할을 해왔던 지역·지구제의 경우도 규제적 이미지로 인하여 토지주로부터 경원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매입과 지역·지구제를 통한 녹지보전 및 회복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수법으로서 검토한 계약형 녹지보전방식은 일본과 녹지보전여건이 유사한 우리에게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새로운 개념의 보전수법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녹지보전제도와 조화있게 운용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녹지보전 방식은 매입 또는 지역·지구의 지정이라는 두 종류로 단순하였는데, 계약형 수법은 일정기간 개발 등으로부터 유보시킬 수 있고, 토지매입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타 보전제도와의 운용관계에 있어서 완충적인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형 녹지는 소유면에서는 공공녹지와 구별되지만, 수립의 이동이나 관리면에서는 공공녹지와 유사한 준공공적 성질을 가지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녹지보전에 대한 주민참여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지구제를 통한 녹지보전방식은 토지주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는 한편, 토지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시킴으로써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보전에 협력하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정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며, 이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계약형 녹지의 경우는 기존의 관련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등의 Incentive가 있고, 관리의 부담까지 경감되므로 지역·지구제보다는

녹지보전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를 얻기가 유리하다. 즉 토지주에게 과거와는 달리 녹지보전에 협조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인식시켜 보전계약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행정·토지주·주민 삼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행정측 입장에서는 먼저, 적은 비용으로 녹지를 보전 및 확충 할 수 있다. 현재의 토지매입을 통한 녹지공간 조성방법이 녹지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장이 되나 이 경우 매입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고, 또한 매입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토지주와의 마찰이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으며 가격 절충에 따른 시간도 소요된다. 그러나 계약형 녹지제도는 토지주의 동의가 전제조건이지만, 계약이 성립되면 민원의 발생 없이 세금감면 등의 적은 비용으로 주민에게 폐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급격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토지매입에 의한 녹지조성은 행정측의 재정능력이 있어야 사업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녹지조성사업(참고로 1997년, 1998년의 서울시 공원녹지 사업종 토지보상비는 각각 전체의 74.4%, 55.6%였다)은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계약형 녹지보전수법을 도입하면 토지매입에 필요한 시간확보 및 계약기간 동안의 녹지의 연속성이 보장되므로 급격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녹지공간의 확충이 가능하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먼저, 토지관리의 부담이 경감된다. 토지주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인근주택의 주민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토지주는 토지관리를 행정측에 일임함으

로써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는 물론 연고권 주장 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의 부담이 경감된다. 토지를 공공용으로 행정측에 제공하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처리되는 등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현 행 지방세법 제234조의 11 제2항).

인근주민 입장에서는 녹지공간의 이용기회가 증대된다. 지역·지구체에 의하여 보전되어 오던 녹지는 그 동안 일반에게 폐쇄되어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없었으나, 계약형 제도에 의하여 확보되는 녹지는 일반에 공개되므로 인근주민들은 녹지공간을 이용할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참고문헌

- 青柳みどり・山根正伸, 1992, “都市近郊における使用賃貸型の林地保全施策の事例について”『造園雑誌』55(5) : 343-348
 日浦勝馬, 1997, “市民緑地制度とシビックトラストの役割”, 都市公園 136 : 81-85
 李龍太・恒川篤史, 1999, “東京都練馬区における樹林地保全制度と樹林地所有者の意識傾向に関する基礎的研究”『造園雑誌』62(5) : 737-740
 李龍太, 1999, “日本の契約型緑地保全制度変遷過程에 관한研究”『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34(6) : 161-171
 練馬区, 1997a, 『練馬区みどりの実態調査報告書』
 練馬区, 1997b, 『練馬区中期実施計画』
 練馬区, 1997c, 『練馬区勢概要』
 練馬区, 1998, 『公園緑地事業の概要』
 和多治, 1996, “都市近郊における「市民の森方式」による緑地保全に関する研究”『日本都市計画學會學術研究論文集』31 : 145-150
 喜間美和・小林重博敬・齋健夫, 1985, “身近な緑地を守るために「市民の森方式」に関する研究”『日本都市計划學會學術研究論文集』20 : 475-480

〈표 5〉 「휴게림」 지정 현황(諫馬町(1998)에서 변경작성)

(단위 : 띠)

명 칭	소재지	면적	지정	수림의 형태	주 요 특 징
清水山	大泉町1-6	7,422	1975	雜木林, 斜面林, 獨立林	白子川右岸, 溪水, 엘레지군락
井頭	東大泉7-26	2,547	1976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푸조나무 등
돈구리야마	北町7-12	1,203	1977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나무 등
미쓰노끼	南大泉3-18	1,290	1977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격송 등
아쓰노기마	東大泉2-27	4,037	1977	雜木林, 斜面林, 獨立林	상수리, 반딧불생육
타케노코	西大泉1-22	2,123	1978	竹 林, 平地林, 獨立林	대부분 때죽나무, 소학교 인접
稻荷山	土支田4-14	22,375	1979	雜木林, 斜面林, 獨立林	白子川右岸, 溪水, 구내 최대
石庭	東大泉7-50	676	1980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농가의 정원 앞을 이용
케이체	石神井臺8-21	1,971	1981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諫馬의 명목인 노박덩굴
春日	春日町5-11	1,165	1982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石神井川左岸
土支田	土支田2-19	1,880	1982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가시나무 등
田中山	谷原5-28	2,686	1983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약50%가 초지, 산벚나무 등
大關山	關町北4-33	2,245	1983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나무 등
모미지야마	大泉町3-23	5,845	1984	雜木林, 斜面林, 獨立林	白子川右岸, 급사면, 단풍나무
早宮	早宮4-13	1,228	1985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느티나무 등
南田中	南田中5-13	1,463	1985	雜木林, 斜面林, 獨立林	石神井川左岸
中原	谷原5-17	1,651	1986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느티나무, 밤나무 등
新井	西大泉5-33	2,876	1986	竹 林, 平地林, 獨立林	대나무, 느티나무 등
羽根木	羽澤3-2	1,637	1987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푸조나무, 느티나무, 펑나무 등
觀音山	上石神井2-10	1,856	1987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느티나무, 펑나무, 삼나무 등
長久保	大泉學園町8-24	1,306	1987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 때죽나무 등
西本村	大泉學園町2-23	5,257	1988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 때죽나무 등
南大泉	南大泉4-39	783	1988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 펑나무, 때죽나무 등
호오지로	南大泉4-39	682	1989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 펑나무, 때죽나무 등
나토나사	南大泉3-39	666	1989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증증나무, 느티, 가시나무 등
超後山	大泉町1-19	1,714	1990	雜木林, 斜面林, 獨立林	白子川左岸, 급사면, 溪水
南田中稻荷	南田中5-14	586	1991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石神井川右岸
후루사토	石神井臺8-21	1,873	1992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히말리아시다, 느티, 때죽나무
모치노끼	高松2-12	907	1992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諫馬의 명목인 감탕나무
오크리야마	南田中4-18	1,995	1992	竹 林, 平地林, 獨立林	맹종죽
上石神井	上石神井4-13	1,662	1992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대형 느티나무와 둥가시나무 등
下石神井	下石神井4-30	1,147	1992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느티나무, 노송나무 등
기탓마라	谷原3-9	2,968	1993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대형 격송, 말리아시다 등
和田前	下石神井3-25	1,663	1993	雜木林, 斜面林, 獨立林	石神井川右岸
新場	春日町6-9	976	1993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구실잣밤나무 등
나끼노미야마竹林	春日町6-13	648	1993	竹 林, 平地林, 獨立林	주로 맹종죽, 광원과 인접
타카마즈	高松2-26	1,317	1994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가시나무, 느티나무 등
호리키타	富士見臺4-25	924	1994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맹종죽, 느티나무 등
松山	石神井臺8-5	2,384	1994	雜木林, 平地林, 數地林	떡갈나무, 느티나무 등
上小樽	南大泉4-43	1,093	1995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나무, 펑나무 등
타케노사토	南大泉4-42	1,246	1996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나무, 펑나무 등
中里사쿠라	大泉町1-19	1,241	1996	雜木林, 斜面林, 獨立林	白子川左岸, 급사면
關町北	關町北4-21	1,273	1996	雜木林, 平地林, 獨立林	상수리나무 등
합 계	43개소	102,487			

주 : 표의 용어는 가급적 일본어 발음대로 옮겼다.